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부승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49

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부승찬·김민석·김병주

박선원・조 국・허 영

안규백・황 희・박범계

추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 게 되어 있음.

그러나 계엄령은 5·16 군사쿠데타, 12·12 군사반란 과정에서 국가 권력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, 그 집행과정에서 전병주, 김오랑, 정선엽 등이 입은 것과 같은 손해 발생이 예상됨. 계엄령 선포는 이처 럼 정변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고, 국민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바,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됨.

이에 국가배상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 집행과정에 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 설해 계엄령 선포 남용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고자 함.

즉,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엄 해

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항).

본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해 전시계엄을 제외하고 국회 사전 동의의 의무화·국회의 사후 동의 권고 그리고 국회가계엄해제 논의 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의 국회논의 참여 보장을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제출됐음. 본 개정안은 위 계엄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함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4148호),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145호),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15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본문 중 "집행하면서"를 "집행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계엄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배상책임) ① 국가나 지방 제2조(배상책임) ①----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 를 위탁받은 사인(이하 "공무 원"이라 한다)이 직무를 집행 -----집행하거나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국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계엄 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 입히거나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 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 장법」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 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 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 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・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(戰死)・순직(殉職)하거나 공상(公傷)을 입은 경우에 본인 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• 유족연금 •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 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「민법」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	<u>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